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590

제출년월일 : 1999. 11. 1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목 적

○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5559호, 98.11.17) 및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 관한조례(99.1.14. 조례2640호)등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내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정하고,

○ 국내기업중 군내투자기업에게도 일정기준에 따라 지원사항을 정하여 국내기 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투자유치활동 및 민원사무 등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안 제3조)

나. 군수는 매년도마다 투자유치목표,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다.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매연도마다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9조)

마. 국내기업 및 도외기업의 관내 창업 또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보조금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20조)

바.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비로서 부담하여야 하며, 군비 부담액을 미리 예측,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안 제21조)

3.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99 - 162호('99. 9. 11 - 9.30)

4. 본　　문 : 따로붙임

5. 관련법규 : 외국인투자촉진법,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투자41507-10215(99. 8. 16)호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표준안

6. 기 타 : 규제 신설, 강화사항 없음.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⑤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8조(외국인 투자의 지원 범위) ①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 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고성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입지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후 3년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

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지원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투자비율 및 지원금액 등은 제8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2.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제17조(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① 군수는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차액보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면적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군수는 도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①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2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이전 보조금) ①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1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군수는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